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안)검토보고서

1. 주요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항~ ③항 생략
④리에 구역은 자연의 부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보합할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를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 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2.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된 지역 부발읍 신하리와 관고동, 기존 부락과 생활권이 이원화된 울면 총곡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대민행정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리를 분리 또는 신설하여 이에 따른 통·리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